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

김희규** · 신승묘***

<요 약>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지식전이 효과를 지님으로써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손상시킴으로써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음과 관련하여 그동안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발생액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개의 실증연구가 있어 왔다. 그런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이익조정이 수반하는 각종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조언함으로써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로 인하여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경우 실제이익조정이 낮은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처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실제이익조정이 낮은 현상은 당해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관찰되는 반면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지닌다.

〈주제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실제이익조정, 지식전이 효과,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

* 본 논문은 첫 번째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 인하대학교 경영학박사, 세무사, gom1148@gmail.com, 주저자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smshin@inha.ac.kr, 교신저자

I. 서 론

기업은 자신의 감사인으로부터 납세준응(tax compliance), 조세불복(tax appeal), 세무계획 및 전략(tax planning & strategy) 등의 세무서비스(tax services)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¹⁾ 다시 말하여 기업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auditor-provided tax services)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때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는 이들 서비스의 제공자가 기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경우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에 감사서비스의 경우에는 그의 수혜자가 주주나 채권자 등과 같은 외부정보 이용자들이므로 공익성이 주로 요구되고, 세무서비스의 경우에는 그의 수혜자가 기업 자신이므로 기업의 사익을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긍정적 효과로는 세무서비스에서 습득한 지식이 감사서비스로 전이됨(knowledge spillover)으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사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부정적 효과로는 세무서비스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됨에 따라 감사서비스의 품질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과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감사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실증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은 대부분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서의 전반적인 실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지식전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감사인의 독립성 손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Roychowdhury(2006)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자는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이외에 실제이익조정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의 발생액 이익조정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이익조정 행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된 것은 발생액 이익조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무제표에 보고함에 있어서 발생주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관련되는 것

1) 공인회계사법은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세무서비스는 금지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감사기업 감사의 동의를 받거나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총수입금액 중에서 회계감사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5.0%에서 2017년 32.5%로 감소한 반면에, 세무서비스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2%에서 2017년 32.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근래에 회계법인에서 세무서비스가 감사서비스와 거의 동등한 정도로 중요한 수입원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으며, 2004년 이후 비감사서비스의 증가는 주로 세무서비스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한다.

임에 따라 감사업무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이익조정은 기업의 경영활동 그 자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사업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이익조정을 하려면 각종 비용이 수반되며 따라서 이러한 비용요인들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행함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²⁾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각종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경영진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조언함으로써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³⁾ 한편 실제이익조정이 수반하는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처럼 감사인의 이해도가 증진되는 현상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면,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세무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낮고 그에 따라 기업에 대한 감사인이 추가적인 이해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⁴⁾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동기 및 추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실제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감소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경우는 구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더 낮은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함께 실시한다.

-
- 2) 실제이익조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벗어나는 의사결정 및 왜곡된 자원배분에 기초함에 따라 기업의 장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raham et al. 2005 ; 김지홍 외 2009). 그리고 실제이익조정의 결과로 증가되는 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반영되어 세금비용을 증가시킨다.
 - 3) 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조직과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건의서한을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다.
 - 4)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조세불복이나 세무계획 및 전략 등과 같이 기업경영상의 중대한 이슈와 관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인은 다방면에서 기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양질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따라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단순한 세무조정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인은 제한적인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따라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그다지 얻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Christensen et al.(2015)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보수수준이 낮은 단순한 납세순응관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서비스의 지식전이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여, 세무서비스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기업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예상과 부합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경우는 구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관찰되는 반면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제이익조정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거나 연구가설의 근거논리를 제공하는 몇 가지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모형과 변수측정, 연구대상기간과 표본선정 등을 포함한 실증연구의 설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제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1. 선행연구 검토

가. 실제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실제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내부환경요인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와 기업의 외부환경요인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먼저 자본조달과 이익조정 유인 및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기업의 내부 환경요인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hen and Zarowin(2010)은 유상증자기업이 발생액 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실제이익조정에도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감사인이 대형 감사인(Big8)인 기업일수록 실제이익조정을 더 선호한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였다. 김지홍 외(2008)는 적자회피와 이익평준화 유인을 가진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에 참여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이익을 높이는 실제이익조정을 수행하며 이익평준화를 위해 이익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이익을 낮추는 실제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가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실제이익조정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성혜 외(2012)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실제이익조정과 음(-)의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보수집 및 분

석능력이 뛰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배한수와 김경화(201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매커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실제이익조정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홍민 외(2013)는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실제이익조정을 덜 함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실제이익조정이 장기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업의 외부환경요인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이라는 관점과 재무분석가의 수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재환과 김승준(2013)은 산업내 시장지배력이 높은 독과점 기업은 정부당국의 규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제이익조정을 덜 하며, 이익조정 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액 이익조정보다는 실제이익조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반하여 신일항 외(2014)는 독점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실제이익조정에 참여하며, 건전한 내부지배구조가 이처럼 실제이익조정에 참여하는 유인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정민 등(2012)은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기업과 미국기업 모두에서 재무분석가의 수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의 압력으로서 작용하기 보다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세금계정을 이용하는 이익조정,⁵⁾ 손실회피 이익조정 및 발생액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몇 개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실제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Dhaliwal et al.(2004)은 4분기 유효세율이 3분기 유효세율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목표이익에 도달할 수 없는 기업이 4분기의 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Cook et al.(2008)은 이러한 Dhaliwal et al.(2004)의 연구를 확장하여 감사인에게 지급한 세무서비스 보수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증분영향이 있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효세율이 감소하지 않으면 목표이익에 도달할 수 없는 기업이 감사인에게 지급한 세무서비스 보수는 4분기 유효세율의 감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5) “이익조정의 마지막 기회(last-chance of earnings management)”로 알려진 세금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손익계산서에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법인세비용을 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목표이익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세금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암시한다.⁶⁾

Christensen et al.(2015)은 Cook et al.(2008)의 연구를 확장하여 감사인의 특성 측면(산업전문성 및 세무전문성,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 여부)에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분기 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 방식의 이익조정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없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전문성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도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세무서비스의 지식전이 효과가 4분기 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 방식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암시한 Cook et al.(2008)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Krishnan and Visvanathan(2011)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손실회피 이익조정과 연관성이 있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사인에게 지급된 세무보수는 손실회피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post-SOX와 감사인 교체의 경우에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를 동일한 회계법인이 제공할 경우에는 세무서비스로부터 얻는 통찰력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식전이효과 가설과 부합한다. 한편, 신승묘와 김희규(2018)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회계이익의 질 혹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고자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발생액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채량적 발생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지식전이효과를 지님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질 혹은 감사품질을 향상시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선행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개의 국내외 선행연구가 있으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에 근거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확장한다. 첫째, 실제이익조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벗어나는 의사결정 및 왜곡된 자원배분에 기초하며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각종 비용을 수반한다. 둘째,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이익조정에 따르는 각종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이때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다.

한편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지식전이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6) 이러한 유효세율의 감소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세금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세금계획(tax planning)의 결과일 수도 있다.

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원칙적으로 감사업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제이익조정은 그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2. 연구가설

Graham et al.(2005)은 경영자가 발생액 이익조정보다 실제이익조정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Roychowdhury(2006)에 따르면 실제이익조정이란 경영자가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을 의도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Cohen et al.(2008)은 발생액 이익조정의 수준이 SOX 이전에는 증가하다가 SOX 이후에는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실제이익조정의 수준은 SOX 이전에는 감소하다가 SOX 이후에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이익을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발생액 이익조정은 감사인과 규제기관의 면밀한 감시의 대상이지만 실제이익조정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에 따라 감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실제이익조정은 비정상적인 경영활동 및 왜곡된 자원배분에 기초하며, 그 결과 향후 기업의 장기 경영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oychowdhury 2006 ; Cohen et al. 2008 ; 김지홍 등 2009). 또한 실제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금비용을 증가시키며, 그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컨대 실제이익조정은 미래의 부정적인 경영성과나 세금비용의 증가와 같은 각종 비용을 발생시키며, 따라서 실제이익조정과 관련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용요인들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각종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경영진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조언함으로써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실제이익조정이 수반하는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감사인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첫째, 실제이익조정이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향후 장기 경영성과 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감지하려면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증진될 수 있다. 둘째, 세금비용은 기업이 처한

각종 상황에 의존하는데 기업의 감사인은 다른 세무전문가에 비하여 기업의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 결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은 다른 세무전문가보다 실제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세금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경영진에게 안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추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입각할 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실증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이러한 예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과연 이러한 예상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이 낮다.

Christensen et al.(2015)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표본기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한 납세순응관련 서비스만 구매한 표본기업이 실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기업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단순한 납세순응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여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지식전이 효과가 그다지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Christensen et al.(2015)의 연구를 참고할 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이 낮은 현상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납세순응관련 서비스가 아니라 조세불복이나 세금계획 및 전략 등과 같이 기업경영상의 중대한 이슈와 관련한 세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자신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고 있는 감사인으로부터 당해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당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은 높을 것이다. 이처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보수수준에 걸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기업 역시 다방면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것이며, 따라서 감사인은 당해 세무서비스로부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추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법인세 세무조정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단순한 납세순응관련 서비

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회계감사의 연장선에서 보다 수월하게 납세준응을 이행하려는 동기에서 자신의 감사인으로부터 당해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당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은 낮을 것이다.⁷⁾ 이처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 감사인은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따라서 감사인은 당해 세무서비스로부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그다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그다지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면 이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 주로 발생할 것이며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여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이 유의하게 낮을 것이지만,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 사이에는 실제이익조정이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예상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보조가설을 설정한다.⁸⁾

(보조가설 1)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이 낮다.

(보조가설 2)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 사이에 실제이익조정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III. 실증연구의 설계

1. 실증분석모형

서론 및 연구가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

7) 참고로 이영한과 윤성만(2011)의 연구에서 단순납세준응 서비스의 보수가 다른 성격의 세무서비스의 보수에 비해 상당히 작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8) 보조가설 1과 2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에 따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을 반영하는 두 개의 dummy 변수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Heckman(1979)의 2단계 접근법을 따르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 vs.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와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 vs.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의 두 가지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후술하는 식 (1)의 Probit 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보조가설을 보조가설 1과 보조가설 2로 나누어서 설정하였다.

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결정권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러한 구매 의사결정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assila et al. 2010 ; 이영한과 윤성만 2011 ; 신승묘와 김희규 2014 등). 또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 의사결정은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사업형태나 지배구조 및 조세유인 등과 같은 관측할 수 있는 요인 이외에 세무서비스 제공자의 특별한 경험과 경력 등 차별적 기술설정, 타 세무서비스 전문가의 가격설정, 기업이 원하는 세무서비스의 정도 등과 같이 관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도 결정된다(McGuire et al. 2012).

위에서 언급한 점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선택 편의(self-selection bias)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증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내생성(endogeneity) 문제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eckman(1979)의 2단계 접근법을 따르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⁹⁾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한 다음의 식 (1)과 같은 Probit 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IMR(Inverse Mills Ratio)를 구한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표본기업과 비교대상이 되는 표본기업은 연구가설과 보조가설 1 및 보조가설 2의 각 경우 사이에 상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모든 기업이 비교대상이 되지만, 보조가설 1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이 비교대상이 되고, 보조가설 2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이 비교대상이 된다.¹⁰⁾ 이에 따라 식 (1)의 Probit 회귀분석모형은 연구가설과 보조가설 1 및 보조가설 2의 경우별로 따로따로 추정한다.

$$\begin{aligned}
 ATS_{it} = & \alpha_0 + \alpha_1 DIROUTR_{it} + \alpha_2 BIG4_{it} + \alpha_3 AUDTEN_{it} + \alpha_4 AUDFEE_{it} \\
 & + \alpha_5 SIZE_{it} + \alpha_6 LEV_{it} + \alpha_7 NAS_{it} + \alpha_8 MTB_{it} + \alpha_9 GAAPETR_{it-1} \\
 & + \alpha_{10} PTROA_{it} + \alpha_{11} EXSALESR_{it} + \alpha_{12} NOL_{it} \\
 &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end{aligned} \tag{1}$$

9) Heckman(1979)의 2단계 접근법은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서, 독립변수의 선택가능성을 IMR(Inverse Mills Ratio)로 추정 후 이를 연구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선택편의의 문제를 완화한다.

10) 기업이 지불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를 산업·연도별 삼분위수로 구분한 후에, 가장 높은 분위수에 속하면 보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고 가장 낮은 분위수에 속하면 보수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류한다.

각각 기업 i , 연도 t 에 대하여,

- ATS = (연구가설의 경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구매하지 않았으면 0 ;
 = (보조가설 1의 경우)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으면 0 ;
 = (보조가설 2의 경우)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으면 0 ;
- $DIROUTR$ = 연말 현재 (사외 이사의 수/총 이사의 수) ;
- $BIG4$ = 해당 연도의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
- $AUDTEN$ = 해당 연도까지의 감사인 재임기간 ;
- $AUD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 $SIZE$ = 연말 현재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
- LEV = 연말 현재 (부채총액/자산총액) ;
- NAS = 해당 연도 (비감사서비스 보수-세무서비스 보수)/감사서비스 보수 ;
- MTB = 연말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주주지분의 장부가액) ;
- $GAAPETR$ = 직전연도의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PTROA$ = 해당 연도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기초 총자산) ;
- $EXSALES$ = 해당 연도 (수출액/매출액) ;
- NOL = 직전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
- IND = 산업더미 변수 ;
- $YEAR$ = 연도더미 변수

위에서 설명한 첫 번째 단계에 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가설 및 보조가설을 검증하며, 이를 위하여 앞의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IMR(Inverse Mills Ratio)을 통제변수로서 포함한 다음의 식 (2)와 같은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REM_{it} = & \beta_0 + \beta_1 ATS_{it} + \beta_2 BIG4_{it} + \beta_3 FOR_{it} + \beta_4 OWNER_{it} + \beta_5 SIZE_{it} + \beta_6 LEV_{it} \\ & + \beta_7 PTROA_{it} + \beta_8 MTB_{it} + \beta_{19} GROW_{it} + \beta_{10} MKT_SHARE_{it-1} \\ & + \beta_{11} CASHCYCLE_{it-1} + \beta_{12} HHI_{it} + \beta_{13} F_ISSUE_{it} + \beta_{14} IMR_{it} \\ &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end{aligned} \quad (2)$$

각각 기업 i , 연도 t 에 대하여,

- REM = 실제이익조정 ;
- FOR = 연말 현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
- $OWNER$ = 연말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 ;
- $GROW$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 MKT_SHARE = 산업·연도별 전기말 시장점유율(9차 산업표준분류 소분류 기준) ;
- $CASHCYCLE$ = 전기말 현금전환주기 ;
- HHI = 허핀달-허쉬만 지수(9차 산업표준분류 소분류 기준) ;
- F_ISSUE = 다음연도에 신주를 발행하였으면 1, 아니면 0 ;
- IMR = 식 (1)의 모형에서 추정되는 Inverse Mills Ratio ;

나머지 변수들은 식 (1)에서와 동일함.

2. 변수의 측정

가. 실제이익조정 변수의 측정

식 (2)의 회귀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실제이익조정(*REM*)은 Roychowdhury(2006)에서의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비정상 영업현금흐름(*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과 비정상 제조원가(*abnormal production cost*) 및 비정상 재량적비용(*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 각각을 구하기 위한 다음의 식 (3)과 (4) 및 (5)를 산업·연도별로 추정한다.

$$\frac{CFO_{it}}{A_{it-1}} = \alpha_0 + \alpha_1 \frac{1}{A_{it-1}} + \alpha_2 \frac{S_{it}}{A_{it-1}} + \alpha_3 \frac{\Delta S_{it}}{A_{it-1}} + \epsilon_{it} \quad (3)$$

$$\frac{PROD_{it}}{A_{it-1}} = \alpha_0 + \alpha_1 \frac{1}{A_{it-1}} + \alpha_2 \frac{S_{it}}{A_{it-1}} + \alpha_3 \frac{\Delta S_{it}}{A_{it-1}} + \alpha_3 \frac{\Delta S_{it-1}}{A_{it-1}} + \epsilon_{it} \quad (4)$$

$$\frac{DISX_{it}}{A_{it-1}} = \alpha_0 + \alpha_1 \frac{1}{A_{it-1}} + \alpha_2 \frac{S_{it-1}}{A_{it-1}} + \epsilon_{it} \quad (5)$$

각각 기업 *i*, 연도 *t*에 대하여,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PROD = 매출원가+재고자산의 변동 ;

DISX = 재량적비용[(판매비+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임차료비용+보험료)] ;

A = 총자산 ;

S = 매출액.

위 3가지 모형의 추정결과 도출되는 각각의 잔차(ϵ)로부터 비정상 영업현금흐름(*R_CFO*)과 비정상 제조원가(*R_PROD*) 및 비정상 재량적 비용(*R_DISX*)을 측정한 다음,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R_CFO*와 *R_DISX* 각각에 대하여 -1을 곱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적인 실제이익조정 측정치들을 합산한 값을 궁극적인 실제이익조정 변수(*REM*)에 대한 측정치로 한다. 요컨대 *REM* 변수는 다음의 식 (6)과 같이 측정한다.

$$REM_{it} = R_PROD_{it} + R_DISX_{it} \times (-1) + R_CFO_{it} \times (-1) \quad (6)$$

나. 기타 변수의 측정

BIG4(감사인인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변수는 감사인의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Cohen and Zarowin(2010)과 Zang(2012)에 의하면 감사인이 *BIG4*인 기업은 발생액 이익조정보다 실제이익조정을 더 선호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BIG4*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한다. *FOR*(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변수와 *OWNER*(최대

주주 지분율) 변수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관련된 통제변수이다. 김성혜 외(2012)와 이아영 외(2012) 등의 선행연구에 의할 때 최대주주 이외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감시수준이 높아져 이익조정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FOR* 변수와 *OWNER*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각각 음수(-)와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 *PTROA*(세전 총자산 이익률), *MTB*(주가-장부가치 비율) 및 *GROW*(매출액 성장률) 변수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SIZE*는 Becker et al.(1998)에 따라 모형에서 생략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수로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호한 수익성을 나타내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SIZ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LEV*는 채무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변수로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져 이익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LEV*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PTROA*는 기업의 경영성고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변수이며, *MTB*와 *GROW*는 미래성장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변수이다.

MKT_SHARE(전기말 시장점유율) 변수는 기업의 산업내 시장지배력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소분류(3자리) 기준 산업 내에서 매출액의 점유율로 측정한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은 이익을 하향조정 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박재환과 김승준 2013), *MKT_SHAR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CASHCYCLE*(전기말 현금전환주기) 변수는 현금전환주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재고자산 보유기간을 더하고 매입채무 회전기간을 차감하여 측정한다.¹¹⁾ 현금전환주기가 긴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낮고 발생액의 반전기간이 긴 특징이 있으며(Zang 2012), 따라서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ASHCYCL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변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정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산업 내 시장점유율의 제곱을 구한 다음 이를 산업별(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기준)로 집계하여 측정한다.¹²⁾ *HHI*가 클수록 산업내 독점도가 높고 *HHI*가 작을수록 산업내 경쟁강도가

11) 구체적으로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ASHCYCLE_t = (\text{매출채권 회수기간}) + (\text{재고자산 보유기간}) - (\text{매입채무 회전기간})$$

$$= \left[\frac{365}{\frac{SALES_t}{(AR_{t-1} + AR_t)/2}} \right] + \left[\frac{365}{\frac{COGS_t}{(INV_{t-1} + INV_t)/2}} \right] - \left[\frac{365}{\frac{COGS_t}{(AP_{t-1} + AP_t)/2}} \right]$$

여기서,

SALES=매출액 ; COGS=매출원가 ; AR=매출채권 ; INV=재고자산 ; AP=매입채무

12)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HHI_{jt} = \sum_{i=1}^n MKT_SHARE_{i,jt}^2$ (여기서 $MKT_SHARE_{i,jt}$ 는 j 산업에 포함된 i 기업 t 기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한다). 본래 HHI는 기업의 산업 내 시장점유율에 100을 곱한

높음을 의미한다. 산업내 경쟁강도가 높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HHI*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F_ISSUE*(차기 신주발행여부)는 자본조달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수이며, 자본조달이 예상되는 기업은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_ISSU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대상기간과 표본기업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ATS)에 관한 데이터가 공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다. 그리고 표본에 포함되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 ① 12월말 결산기업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일 것
- ② ATS의 구매여부와 보수, 비감사서비스 보수, 감사서비스 보수 및 이사회 구성내역 등 실증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업일 것
- ③ FnGuide의 DataGuide Pro 및 KIS VALUE에서 분석에 필요한 재무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일 것
- ④ 당기순이익이 음수가 아닌 기업일 것
- ⑤ 산업·연도별로 10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할 것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수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공시한 사업보고서로부터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여부 및 보수, 감사서비스 및 비감사서비스의 보수,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총 17,560개 기업·연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둘째, FnGuide의 DataGuide Pro로부터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액과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비금융업 외부감사대상 307,397개 기업·연 데이터를 추출하였다.¹³⁾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로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구한 다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278,420개 기업·연 데이터를 제거하여 28,977개 기업·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셋째, FnGuide의 DataGuide로부터 2003년부터 2016년

다음 제곱 값을 구하고 이를 산업별로 집계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일항 외(2014)와 같이 산업 내 시장점유율의 제곱 값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HHI* 측정치는 실제 *HHI*를 10,000으로 나눈 값과 같다.

13)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그러나 분석에 필요한 일부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대상연도의 전기 및 차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까지의 비금융업 27,118개 기업·연 재무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과정부터 세 번째 과정까지 각 과정별로 수집한 데이터를 병합(merge)하였다.

이처럼 병합된 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21,628개 기업·연 데이터,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78개 기업·연 데이터 및 산업·연도별로 10개 미만의 데이터가 있는 169개 기업·연 데이터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되는 최종 기업·연 데이터는 총 7,102개이다. <표 1>은 이처럼 구한 표본기업의 산업별·연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단에는 연도별 ATS 구매기업의 수 및 ATS 구매기업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ATS 구매기업의 비율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15.33%~19.24%인 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4.60%~26.79%로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표 1> 표본기업의 산업별·연도별 분포

산업 \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식료품, 음료, 담배제조업	28	25	28	30	22	20	35	35	34	34	35	35	361
섬유제품, 의복 제조업	15	18	16	11	0	0	18	15	14	11	12	16	146
목재, 펄프 및 종이, 인쇄업 등	15	12	12	13	0	12	17	14	17	14	13	10	149
코크스 및 화학물질 제조업	38	49	48	49	46	49	60	66	65	61	61	68	66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2	30	32	29	35	42	43	45	39	30	38	38	43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	20	22	22	17	18	23	25	23	22	22	22	25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	16	18	17	13	13	15	16	15	18	17	19	197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5	52	50	58	55	48	55	69	63	56	63	65	68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69	71	66	70	69	66	89	88	88	100	113	114	1,003
전기장비, 기계,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0	95	103	110	89	92	113	143	134	133	128	139	1,35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처리, 환경복원업	0	10	12	12	10	0	11	12	12	12	12	12	115
건설업	31	33	30	31	32	29	22	16	20	14	14	17	289
도매 및 소매업	32	35	42	43	37	38	45	54	51	44	43	47	511
운수, 숙박,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38	42	49	51	44	42	36	39	48	44	44	54	531
기타 업종	40	43	42	37	30	28	31	34	38	29	27	27	406
연도별 표본기업의 수	510	551	570	583	499	497	613	671	661	622	642	683	7,102
연도별 ATS 구매기업의 수	85	98	109	90	96	78	94	120	117	153	172	176	1,388
ATS 구매기업의 비율(%)	16.67	17.79	19.12	15.44	19.24	15.69	15.33	17.88	17.70	24.60	26.79	25.77	19.54

14)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더 많이(22.35% vs. 16.96%)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비하여 보수수준이 높은 세무서비스는 더 많이(9.32% vs. 4.05%) 구매하고, 보수수준이 낮은 세무서비스는 더 적게(4.59% vs. 6.89%)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실증분석결과

1.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표 2>는 IMR(Inverse Mills Ratio)를 구하기 위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ATS)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식(1)의 프로빗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선택모형에 대한 프로빗 회귀분석결과

$$\begin{aligned}
 ATS_{it} = & \alpha_0 + \alpha_1 DIROUTR_{it} + \alpha_2 BIG4_{it} + \alpha_3 AUDTEN_{it} + \alpha_4 AUDFEE_{it} + \alpha_5 SIZE_{it} + \alpha_6 LEV_{it} \\
 & + \alpha_7 NAS_{it} + \alpha_8 MTB_{it} + \alpha_9 GAAPETR_{it-1} + \alpha_{10} PTROA_{it} + \alpha_{11} EXSALESR_{it} + \alpha_{12} NOL_{it} \\
 &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end{aligned}$$

Variables			연구가설 관련		보조가설 1 관련		보조가설 2 관련	
			Coef.	Wald χ^2	Coef.	Wald χ^2	Coef.	Wald χ^2
<i>Intercept</i>			-3.2164***	(79.34)	-8.6699***	(283.98)	4.5842***	(46.31)
<i>DIROUTR</i>			0.2084*	(2.08)	0.5541***	(6.17)	0.1734	(0.71)
<i>BIG4</i>			0.1776***	(18.52)	0.2729***	(16.15)	0.1629***	(7.94)
<i>AUDTEN</i>			0.0158***	(7.01)	0.0265***	(9.82)	0.0111	(1.45)
<i>AUDFEE</i>			0.2305***	(19.76)	0.6171***	(60.86)	-0.3357***	(18.06)
<i>SIZE</i>			-0.0055	(0.04)	-0.0120	(0.09)	-0.0935**	(5.25)
<i>LEV</i>			-0.4737***	(15.83)	-0.2659*	(2.14)	-0.3947**	(5.01)
<i>NAS</i>			0.0526	(0.93)	0.1032*	(2.11)	0.0538	(0.37)
<i>MTB</i>			-0.0121	(0.36)	0.0046	(0.03)	-0.0140	(0.21)
<i>GAAPETR</i>			-0.2898**	(2.99)	-0.5613**	(4.82)	-0.6719***	(6.64)
<i>PTROA</i>			0.5397**	(3.67)	0.7561**	(3.07)	-0.0516	(0.02)
<i>EXSALESR</i>			-0.3409***	(13.66)	-0.2738**	(4.17)	-0.1078	(0.62)
<i>NOL</i>			0.1507	(1.26)	0.0122	(0.00)	0.2163	(1.48)
<i>IND & YEAR</i>			포함		포함		포함	
표 본 수	ATS 비구매 기업		5,714		5,714		5,714	
	ATS 구매기업	보수 높음	467		467		—	
		보수 중간	510		—		—	
		보수 낮음	411		—		411	
	합계		7,102		6,181		6,125	
Pseudo-R ²			0.0608		0.1744		0.0892	

- (주1) *ATS*=해당 연도에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구매하지 않았으면 0; *DIROUTR*=연말 현재 (사외 이사의 수/총 이사의 수); *BIG4*=해당 연도의 감사인이 Big4 체류법인이면 1, 아니면 0; *AUDTEN*=해당 연도까지의 감사인 재임기간; *AUDFEE*=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SIZE*=연말 현재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LEV*=연말 현재 (부채총액/자산총액); *NAS*=해당 연도 (비감사서비스 보수-세무서비스 보수)/감사서비스 보수; *MTB*=연말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주주지분의 장부가액); *GAAPETR*=직전연도의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PTROA*=해당 연도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기초 총자산); *EXSALESR*=해당 연도 (수출액/매출액); *NOL*=직전연도에 이월 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IND*=산업더미 변수; *YEAR*=연도더미 변수.
-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이 10%, 5% 및 1% 미만임을 의미함.

<표 2>에서 Column 1은 연구가설의 검증과 관련하여 (*ATS* 구매기업 vs. *ATS* 비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고, Column 2는 보조가설 1의 검증과 관련하여 (보수수준이 높은 *ATS* 구매기업 vs. *ATS* 비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며, Column 3은 보조가설 2의 검증과 관련하여 (보수수준이 낮은 *ATS* 구매기업 vs. *ATS* 비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먼저 (*ATS* 구매기업 vs. *ATS* 비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한 Column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IROUTR*, *BIG4*, *AUDTEN* 및 *AUDFEE* 변수는 모두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이 Big4 감사인에 해당할수록, 감사인 재임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수준이 높은 *ATS* 구매기업 vs. *ATS* 비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한 Column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IROUTR*, *BIG4*, *AUDTEN* 및 *AUDFE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모두 Column 1에서의 것보다 크며, Wald χ^2 값도 *BIG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Column 1에서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보수수준이 낮은 *ATS* 구매기업 vs. *ATS* 비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한 Column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IROUTR* 변수와 *AUDTEN*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BIG4*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지만 Column 1에서의 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AUDFE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Column 2와 Column 3의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함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높아 지식전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규모가 작고 조세부담이 적은 기업은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와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사이에 선택 유인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사이에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실제이익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본 연구의 보조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 자기선택편의로 인한 내생성 문제의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된 7,102개 기업·연 데이터에 있는 모든 연속형 변수들은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 1% 수준에서 Winsorize 하였으며, <표 3>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ATS* 변수와 *BIG4*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19.54% 및 61.31%이며, 이는 전체기업의 19.54%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고 전체기업의 61.31%가 *BIG4*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체이익조정을 나타내는 변수인 *REM*의 평균과 중위수는 0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 변수의 평균은 8.36%이고 중위수는 2.35%로서 서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KOSPI200과 같은 특정 기업군에 집중하여 투자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기말 시장점유율(*MKT_SHARE*) 변수는 평균이 중위수와 제3사분위수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일부 산업에서 큰 독과점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HI* 변수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0902와 0.0485이며, 이는 표본기업이 속한 산업이 집중도가 낮은 경쟁시장의 상태임을 나타낸다.¹⁵⁾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Variables	Mean	Median	Q1	Q3	Min	Max	STD
<i>REM</i>	0.0000	0.0117	-0.0931	0.1148	-1.4995	0.9596	0.2193
<i>ATS</i>	0.1954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3966
<i>BIG4</i>	0.6131	1.0000	0.0000	1.0000	0.0000	1.0000	0.4871
<i>FOR</i>	8.3597	2.3501	0.2963	11.3326	0.0000	57.6673	12.5795
<i>OWNER</i>	43.9271	43.4400	32.6800	54.4800	11.1300	76.1900	15.0403
<i>SIZE</i>	19.0125	18.7467	18.0650	19.6930	16.7756	23.4169	1.3559
<i>LEV</i>	0.3653	0.3575	0.2208	0.4958	0.0617	0.7535	0.1735
<i>PTROA</i>	0.0964	0.0772	0.0418	0.1297	0.0045	0.3818	0.0754
<i>MTB</i>	1.2858	0.9593	0.6250	1.5516	0.2412	6.1413	1.0445
<i>GROWTH</i>	0.1074	0.0747	-0.0146	0.1918	-0.3644	1.0652	0.2234
<i>MKT_SHARE</i>	0.0329	0.0062	0.0022	0.0239	0.0002	0.4604	0.0744
<i>CASHCYCLE</i>	90.3479	76.3082	40.0455	122.7266	-45.9257	380.5140	77.0092
<i>HHI</i>	0.0902	0.0485	0.0277	0.1107	0.0078	0.5898	0.1080
<i>F_ISSUE</i>	0.2354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4243

15) HHI 지수를 산업내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정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0.01~0.1은 집중도가 거의 없는 경쟁시장, 0.1~0.18은 경쟁적 시장, 0.18~0.4는 과점적 시장, 0.4 이상은 독점적 시장으로 본다.

(주)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REM =비정상제조원가 추정액+비정상 재량적비용 추정액 $\times(-1)$ +비정상 영업현금흐름 추정액 $\times(-1)$; ATS =해당 연도에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구매하지 않았으면 0; $BIG4$ =해당 연도의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FOR =연말 현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OWNER$ =연말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 $SIZE$ =연말 현재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LEV =연말 현재 (부채총액/자산총액); $GROW$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PTROA$ =해당 연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기초 총자산); MTB =연말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주주지분의 장부가액); MKT_SHARE =산업·연도별 전기말 시장점유율(9차 산업표준분류 소분류 기준); $CASHCYCLE$ =전기말 현금전환주기; HHI =허핀달-허쉬만 지수(9차 산업표준분류 소분류 기준); F_ISSUE =다음 연도에 신주를 발행하였으면 1, 아니면 0.

3.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표 4>는 변수들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가설 검증과 관련하여 주된 관심대상 변수인 REM (실제이익조정)과 ATS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여부)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0.0336 으로서 음수이고 이에 대한 p -값은 0.0046 으로서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이 낮다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 변수와 산업내 시장점유율(MKT_SHARE) 변수사이의 상관계수가 0.5450 이고 기업규모($SIZE$) 변수와 외국인지분율(FOR)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0.4886 인 것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경우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설명변수 사이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각 설명변수별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설명변수들에 대한 VIF 값이 3.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⁶⁾

16)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i>REM</i>	1													
(2) <i>ATS</i>	-0.0336 (0.0046)	1												
(3) <i>BIG4</i>	-0.0453 (0.0001)	0.0781 (<.0001)	1											
(4) <i>FOR</i>	-0.0913 (<.0001)	0.0809 (<.0001)	0.2424 (<.0001)	1										
(5) <i>OWNER</i>	0.0559 (<.0001)	-0.0050 (0.6750)	0.0152 (0.2017)	-0.1552 (<.0001)	1									
(6) <i>SIZE</i>	-0.0109 (0.3577)	0.1004 (<.0001)	0.3257 (<.0001)	0.4886 (<.0001)	-0.0540 (<.0001)	1								
(7) <i>LEV</i>	-0.0206 (0.0833)	-0.0246 (0.0383)	0.0898 (<.0001)	-0.0270 (0.0229)	-0.0765 (<.0001)	0.3015 (<.0001)	1							
(8) <i>PTROA</i>	-0.0195 (0.1005)	0.0219 (0.0654)	0.0256 (0.0312)	0.1661 (<.0001)	-0.0135 (0.2560)	-0.1239 (<.0001)	-0.2963 (<.0001)	1						
(9) <i>MTB</i>	-0.1757 (<.0001)	0.0323 (0.0065)	0.0404 (0.0007)	0.2225 (<.0001)	-0.1466 (<.0001)	0.0647 (<.0001)	0.0057 (0.6318)	0.3723 (<.0001)	1					
(10) <i>GROWTH</i>	-0.0320 (0.0071)	-0.0208 (0.0803)	0.0198 (0.0961)	-0.0181 (0.1267)	-0.0545 (<.0001)	-0.0464 (<.0001)	0.1162 (<.0001)	0.3416 (<.0001)	0.1839 (<.0001)	1				
(11) <i>MKT_SHARE</i>	-0.0584 (<.0001)	0.0506 (<.0001)	0.1892 (<.0001)	0.3388 (<.0001)	-0.0333 (0.0051)	0.5450 (<.0001)	0.1224 (<.0001)	0.0012 (0.9180)	0.1625 (<.0001)	-0.0349 (0.0033)	1			
(12) <i>CASHCYCLE</i>	-0.0709 (<.0001)	-0.0343 (0.0038)	-0.1022 (<.0001)	-0.0878 (<.0001)	-0.0451 (0.0001)	-0.1905 (<.0001)	-0.2132 (<.0001)	-0.0292 (0.0140)	-0.0202 (0.0893)	0.0210 (0.0763)	-0.1454 (<.0001)	1		
(13) <i>HHI</i>	-0.0110 (0.3524)	0.0034 (0.7766)	0.0379 (0.0014)	0.1142 (<.0001)	-0.0714 (<.0001)	0.1476 (<.0001)	-0.0101 (0.3956)	0.0761 (<.0001)	0.0496 (<.0001)	0.0001 (0.9922)	0.3411 (<.0001)	-0.1205 (<.0001)	1	
(14) <i>F_ISSUE</i>	-0.0516 (<.0001)	0.0061 (0.6103)	-0.0471 (<.0001)	-0.0776 (<.0001)	-0.1355 (<.0001)	-0.0994 (<.0001)	0.0576 (<.0001)	0.0740 (<.0001)	0.1529 (<.0001)	0.1176 (<.0001)	-0.0641 (<.0001)	0.0257 (0.0306)	-0.0185 (0.1184)	1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3>에서와 동일함.

(주2) 굵게 표시된 수치는 10% 미만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4. 연구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KOSPI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및 KOSDAQ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식 (2)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3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Column 1(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의 관심대상 변수인 *ATS*에 대한 회귀계수가 -0.0119 로서 음수이며 이는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그리고 Column 2(KOSPI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Column 3(KOSDAQ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도 *ATS*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수이며, Column 3의 경우에는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이 낮다.” 라는 연구가설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에 언급하는 바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이익조정이 수반하는 각종 비용요인에 대하여 경영진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조언함으로써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이처럼 실제이익조정이 수반하는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증진된다.

<표 5>에서 통제변수로서 도입한 *BIG4*, *FOR*, *OWNER* 및 *SIZE*에 대한 회귀계수들을 살펴보면 당초의 예상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이고 있다.¹⁷⁾ 그리고 산업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MKT_SHARE* 변수와 해당 산업의 경쟁강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HHI*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모두 예상한 대로 음수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MKT_SHARE* 변수에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강도 보다는 산업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실제이익조정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LEV* 변수와 *CASHCYCL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예상과 달리 각각 음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현금전환주기가 긴 기업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활동이 제한됨에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F_ISSU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예상과 달리 음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차기에 신주발행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연구개발비나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함에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7) 다만 *OWNER*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KOSPI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음수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연구가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REM_{it} = \beta_0 + \beta_1 ATS_{it} + \beta_2 BIG4_{it} + \beta_3 FOR_{it} + \beta_4 OWNER_{it} + \beta_5 SIZE_{it} + \beta_6 LEV_{it} + \beta_7 PTROA_{it} + \beta_8 MTB_{it} + \beta_9 GROW_{it} + \beta_{10} MKT_SHARE_{it-1} + \beta_{11} CASHCYCLE_{it-1} + \beta_{12} HHI_{it} + \beta_{13} F_ISSUE_{it} + \beta_{14} IMR_{it}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Variables	전체 표본기업		KOSPI 기업		KOSDAQ 기업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i>Intercept</i>	-0.6147***	(-7.23)	-0.8152***	(-6.57)	-0.2946**	(-2.20)
<i>ATS</i>	-0.0119**	(-1.73)	-0.0081	(-0.85)	-0.0188**	(-1.87)
<i>BIG4</i>	0.0155**	(2.20)	0.0240**	(2.23)	0.0062	(0.65)
<i>FOR</i>	-0.0014***	(-5.11)	-0.0011***	(-3.39)	-0.0018***	(-3.39)
<i>OWNER</i>	0.0002	(1.23)	-0.0003	(-1.15)	0.0008***	(3.30)
<i>SIZE</i>	0.0261**	(7.73)	0.0336**	(7.05)	0.0146**	(2.36)
<i>LEV</i>	-0.0996***	(-4.93)	-0.0947***	(-3.21)	-0.0660**	(-2.30)
<i>PTROA</i>	0.2650***	(5.05)	0.4744***	(4.85)	0.1690***	(2.68)
<i>MTB</i>	-0.0404***	(-10.14)	-0.0605***	(-8.86)	-0.0272***	(-5.50)
<i>GROWTH</i>	-0.0082	(-0.58)	-0.0078	(-0.31)	-0.0171	(-1.00)
<i>MKT_SHARE</i>	-0.1181**	(-2.02)	-0.0648	(-0.95)	-0.6693***	(-4.35)
<i>CASHCYCLE</i>	-0.0003***	(-6.47)	-0.0004***	(-6.39)	-0.0001***	(-3.00)
<i>HHI</i>	-0.0077	(-0.27)	-0.0232	(-0.35)	-0.0163	(-0.54)
<i>F_ISSUE</i>	-0.0153**	(-2.26)	-0.0294***	(-2.47)	-0.0039	(-0.48)
<i>IMR</i>	0.2009***	(7.68)	0.2636***	(7.06)	0.1294***	(3.57)
<i>IND & YEAR</i>	포함		포함		포함	
표	ATS 구매 기업	1,388	760	628		
본	ATS 비구매 기업	5,714	2,640	3,074		
수	합계	7,102	3,400	3,702		
Adj. R ²		0.0588	0.0943	0.0484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3>에서와 동일함.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이 10%, 5% 및 1% 미만임을 의미함.

(주3) t-value는 2-way clustering을 이용하여 표준오차를 조정한 후의 값임.

5. 보조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보조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으로 구성된 별도의 표본기업을 구성한 후에 식 (2)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보조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낮은 보수수준의 감

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으로 구성된 별도의 표본기업을 구성한 후에 식 (2)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보조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과 보조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은 별도로 구성된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KOSPI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및 KOSDAQ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보조가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REM_{it} = \beta_0 + \beta_1 ATS_{it} + \beta_2 BIGA_{it} + \beta_3 FOR_{it} + \beta_4 OWNER_{it} + \beta_5 SIZE_{it} + \beta_6 LEV_{it} + \beta_7 PTROA_{it} + \beta_8 MTB_{it} + \beta_9 GROW_{it} + \beta_{10} MKT_SHARE_{it-1} + \beta_{11} CASHCYCLE_{it-1} + \beta_{12} HHI_{it} + \beta_{13} F_ISSUE_{it} + \beta_{14} IMR_{it}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Panel A : 보조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Variables		전체 표본기업		KOSPI 기업		KOSDAQ 기업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i>Intercept</i>		-0.6783***	(-7.11)	-0.8096***	(-5.70)	-0.4551***	(-3.14)
<i>ATS</i>		-0.0225**	(-1.68)	-0.0254*	(-1.52)	-0.0257	(-1.16)
<i>Control Variables</i>		포함		포함		포함	
표 본 수	높은 보수수준의 ATS 구매 기업	467		317		150	
	ATS 비구매 기업	5,714		2,640		3,074	
	합계	6,181		2,957		3,224	
Adj. R ²		0.0576		0.0957		0.0400	

<Panel B : 보조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Variables		전체 표본기업		KOSPI 기업		KOSDAQ 기업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i>Intercept</i>		-0.4729***	(-5.87)	-0.5981***	(-5.15)	-0.2742**	(-2.08)
<i>ATS</i>		0.0068	(0.65)	0.0019	(0.13)	0.0066	(0.46)
<i>Control Variables</i>		포함		포함		포함	
표 본 수	낮은 보수수준의 ATS 구매 기업	411		156		255	
	ATS 비구매 기업	5,714		2,640		3,074	
	합계	6,125		2,796		3,329	
Adj. R ²		0.0604		0.0984		0.0469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3>에서와 동일함.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이 10%, 5% 및 1% 미만임을 의미함.

(주3) t-value는 2-way clustering을 이용하여 표준오차를 조정한 후의 값임.

<표 6>의 Panel A에서 Column 1(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을 살펴보면 *ATS*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0.0225 로서 음수이며 이는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그리고 Column 2(KOSPI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Column 3(KOSDAQ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도 *ATS*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수이며, Column 2의 경우에는 10%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는 “높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이 낮다.” 라는 보조가설 1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에 언급하는 바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경영 상의 중대한 이슈와 관련된 것일 경우 당해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은 높다. 둘째, 이처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기업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이에 따라 감사인은 당해 세무서비스로부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얻는다. 셋째, 이러한 결과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지닌다.

<표 6>의 Panel B에서 Column 1(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을 살펴보면 *ATS*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Column 2(KOSPI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Column 3(KOSDAQ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는 “낮은 보수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 사이에 실제이익조정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라는 보조가설 2와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에 언급하는 바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법인세 세무조정과 같은 단순한 납세순응 서비스일 경우 당해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은 낮다. 둘째, 이처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 감사인은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따라서 감사인은 당해 세무서비스로부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그다지 얻지 못한다. 셋째, 이러한 결과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V. 결 론

그동안 기업의 감사인이 감사서비스와 함께 세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두고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때 긍정적 효과로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지식전이 효과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부정적 효과로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과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감사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실증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자는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이외에 실제이익조정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의 발생액 이익조정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이익조정 행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된 것은 발생액 이익조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무제표에 보고함에 있어서 발생주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관련되는 것임에 따라 감사업무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이익조정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사업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이익조정은 비정상적인 경영의사결정 및 왜곡된 자원배분에 기초함에 따라 기업의 장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여 실제이익조정을 하려면 각종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요인들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 행위를 함에 있어 제약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경영진에게 실제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각종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조언함으로써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처럼 감사인의 이해도가 증진되는 현상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현상이 관찰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서 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관찰되는 반면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이익조정은 그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제이익조정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성혜 · 이아영 · 전성빈. 2012. “외국인투자자의 특성과 실제이익조정－외국인대주주의 역할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7권 제2호 : 129－165.
- 김지홍 · 고재민 · 고윤성. 2008. “적자 회피 및 이익 평준화를 위한 실제 이익조정 활동”. 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 31－63.
- 김지홍 · 배지현 · 고재민. 2009. “실제 이익조정이 장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4권 제4호 : 31－70.
- 박재환 · 김승준. 2012.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조세회피행위를 통하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 253－283.
- 박재환 · 김승준. 2013. “시장지배력과 이익조정 수단”. 회계저널 제22권 제5호 : 195－224.
- 배한수 · 김경화. 2012. “기업지배구조가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2호 : 115－146.
- 신승묘 · 김희규. 2014. “기업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 47－72.
- 신승묘 · 김희규. 2018.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23권 제3호 : 145－170.
- 신일항 · 이명건 · 이은철. 2014. “산업 내 경쟁정도와 실제이익조정－기업지배구조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9권 제3호 : 57－90.
- 유정민 · 윤금상 · 고재민 · 김동하. 2012. “재무분석가의 수가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한－미 비교”. 회계저널 제21권 제5호 : 175－207.
- 이아영 · 전성빈 · 김성혜. 2012. “지배주주의 지분구조와 실제이익조정－소유권과 소유지배피리도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7권 제1호 : 157－189.
- 이영한 · 윤성만. 2011.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이 기업의 외부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6권 제2호 : 185－219.
- 전홍민 · 한혜상 · 유용근. 2013. “경영자 지분율이 실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2권 제5호 : 1219－1238.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 1－24.
- Christensen, B. E., A. J. Olson, and T. C. Omer. 2015. The Role of Audit Firm Expertise and Knowledge Spillover in Mitigating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he Tax Account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7 (1) : 3－36.
- Cohen, D. A., A. Dey, and T. Z. Lys. 2008. Real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 and Post-Sarbanes-Oxley Period. *The Accounting Review* 83(3) : 757－

787.

- Cohen, D. A., and P. Zarowin. 2010.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around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50 (1) : 2–19.
- Cook, K. A., G. R. Huston, and T. C. Omer. 2008. Earnings Management Through Effective Tax Rates : The Effects of Tax Planning Investment and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 (2) : 447–471.
- Francis, J. R., E. L. Maydew, and H. C. Sparks. 1999. “The Role of Big 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crual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8 : 17–34.
- Graham, J. R., C. R. Harvey, and S. Rajgopal. 2005.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0 : 3–73.
- Heckman, J. J. 1979. The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 : 153–162.
- Krishnan, G. V., and G. Visvanathan. 2011.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3 (2) : 111–135.
- Lassila, D. R., T. C. Omer, M. K. Shelley, and L. M. Smit. 2010. Do Complexity, Governance, and Auditor Independence Influence Whether Firms Retain Their Auditors for Tax Servic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2 (1) : 1–23.
- McGuire, S. T., T. C. Omer, and D. Wang. 2012. Tax Avoidance : 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7 (3) : 975–1003.
- Roychowdhury, S. 2006.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2 : 335–370.
- Zang, A. Y. 2012. Evidence on the Trade-off between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87 : 675–703.

The Effects of Auditor – provided Tax Services on Firm’s Activity of Real Earnings Management

Heuikyu Kim* · Seung–Myo Shin**

— <Abstract> —

Auditor – provided tax services(hereinafter, ATS) can enhance audit quality by having knowledge spillover effects, or lower audit quality by impairing auditor independence. In relation to these two possibilities, there are several empiric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s of ATS on the accrual – based earnings management. However, ATS may affect the firm’s activity of real earnings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auditor can contribute to restraining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by advising the management on the various cost factors that accompany i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udited company, and because the auditor’s understanding can be promoted by the ATS.

Based on the above points,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for the Korean listed companies on whether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is low in case of the firms that purchase ATS. Test results show that the firms who purchase ATS have lower real earnings management than those who did not. And this phenomenon is observed when the fee level of tax services is high, but not when the fee level of tax services is low.

These results imply that ATS can reduce distortions in resource allocation by restraining the firm’s activity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consequently have a positive effect on long term sustainable corporate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makes an academic contribution by expanding not only the existing research regarding the effects of ATS on earnings management but also the existing research regarding the factors affecting real earnings management of firms.

<Key words> Auditor – Provided Tax Services, Real Earnings Management, Knowledge Spillover Effect, Fee Level of Tax Services

* Ph.D, School of Business, Inha University, gom1148@gmail.com,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Inha University, smshin@inha.ac.kr, Corresponding Author